

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73호

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520호, 2022.9.15.)」을 다음과 같이 조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층수별,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 : 천원/m²)

| | 구 분 (주거전용면적기준) | 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5층 이하 | 40m ² 이하 | 1,943 |
| | 40m ² 초과 ~ 50m ² 이하 | 2,035 |
| | 50m ² 초과 ~ 60m ² 이하 | 1,970 |
| | 60m ² 초과 ~ 85m ² 이하 | 1,896 |
| | 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 | 1,942 |
| | 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 | 1,924 |
| | 125m ² 초과 | 1,897 |

| | |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6~10층 이하 | 40m ² 이하 | 2,079 |
| | 40m ² 초과 ~ 50m ² 이하 | 2,178 |
| | 50m ² 초과 ~ 60m ² 이하 | 2,108 |
| | 60m ² 초과 ~ 85m ² 이하 | 2,029 |
| | 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 | 2,078 |
| | 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 | 2,059 |
| | 125m ² 초과 | 2,030 |
| 11~15층 이하 | 40m ² 이하 | 1,951 |
| | 40m ² 초과 ~ 50m ² 이하 | 2,044 |
| | 50m ² 초과 ~ 60m ² 이하 | 1,978 |
| | 60m ² 초과 ~ 85m ² 이하 | 1,904 |
| | 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 | 1,950 |
| | 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 | 1,932 |
| | 125m ² 초과 | 1,905 |
| 16~25층 이하 | 40m ² 이하 | 1,972 |
| | 40m ² 초과 ~ 50m ² 이하 | 2,066 |
| | 50m ² 초과 ~ 60m ² 이하 | 2,000 |
| | 60m ² 초과 ~ 85m ² 이하 | 1,925 |
| | 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 | 1,972 |
| | 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 | 1,954 |
| | 125m ² 초과 | 1,926 |
| 26~30층 이하 | 40m ² 이하 | 2,004 |
| | 40m ² 초과 ~ 50m ² 이하 | 2,099 |
| | 50m ² 초과 ~ 60m ² 이하 | 2,032 |
| | 60m ² 초과 ~ 85m ² 이하 | 1,956 |
| | 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 | 2,004 |
| | 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 | 1,985 |
| | 125m ² 초과 | 1,957 |
| 31~35층 이하 | 40m ² 이하 | 2,036 |
| | 40m ² 초과 ~ 50m ² 이하 | 2,133 |
| | 50m ² 초과 ~ 60m ² 이하 | 2,064 |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60㎡ 초과 ~ 85㎡ 이하 | 1,987 |
| | 85㎡ 초과 ~ 105㎡ 이하 | 2,035 |
| | 105㎡ 초과 ~ 125㎡ 이하 | 2,017 |
| | 125㎡ 초과 | 1,988 |
| 36~40층 이하 | 40㎡ 이하 | 2,067 |
| | 40㎡ 초과 ~ 50㎡ 이하 | 2,165 |
| | 50㎡ 초과 ~ 60㎡ 이하 | 2,095 |
| | 60㎡ 초과 ~ 85㎡ 이하 | 2,017 |
| | 85㎡ 초과 ~ 105㎡ 이하 | 2,066 |
| | 105㎡ 초과 ~ 125㎡ 이하 | 2,047 |
| | 125㎡ 초과 | 2,018 |
| 41~45층 이하 | 40㎡ 이하 | 2,094 |
| | 40㎡ 초과 ~ 50㎡ 이하 | 2,194 |
| | 50㎡ 초과 ~ 60㎡ 이하 | 2,124 |
| | 60㎡ 초과 ~ 85㎡ 이하 | 2,044 |
| | 85㎡ 초과 ~ 105㎡ 이하 | 2,094 |
| | 105㎡ 초과 ~ 125㎡ 이하 | 2,074 |
| | 125㎡ 초과 | 2,045 |
| 46~49층 이하 | 40㎡ 이하 | 2,160 |
| | 40㎡ 초과 ~ 50㎡ 이하 | 2,263 |
| | 50㎡ 초과 ~ 60㎡ 이하 | 2,190 |
| | 60㎡ 초과 ~ 85㎡ 이하 | 2,108 |
| | 85㎡ 초과 ~ 105㎡ 이하 | 2,159 |
| | 105㎡ 초과 ~ 125㎡ 이하 | 2,139 |
| | 125㎡ 초과 | 2,109 |

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천원/m²)

지하층건축비
(지하층면적기준)

926

※주거전용면적과 무관

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

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: 1.1724

※ '20.3.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(=1)를 기준으로 산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